

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7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 5월 26 일

발 의 자 : 박권중 의원 외 9 인

1. 제안이유

성남시의회 회의규칙중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관하여 시간제한 및 제반 절차를 명확히하고자 개정하려함.

2. 주요골자

- 투표절차에 의장의 투표시기 지정(안 제42조제4항)
 - 의장, 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후에 투표
- 집행부에 대한질문 규정 신설(안 제66조의2)
 - 질문시간 : 20분 (보충질문 → 10분)
 - 의장은 필요시 보충질문 허가
 - 질문요지서 제출 :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
(의원 → 의장)
 - 질문요지서 송부 : 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(의장 → 시장)

성남시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성남시의회의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 제4항중 “감표위원은”을 “의장, 감표위원은”으로 한다.

제66조중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66조 다음에 제6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6조의 2(집행부에 대한질문)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
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
(이하 “시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수 있다

②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
허가 할 수 있다.

③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수 없다. 다만,
보충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.

④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
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
질문시간 48시간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2조(투표절차) ①(생략) ②(생략) ③(생략) ④ <u>감표위원은 다른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후에 투표한다.</u>	제42조(투표절차)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 ④ <u>의장, 감표위원은 -----</u> -----
제66조(시장등의출석요구)①(생략) ②(생략) ③(생략) ④(생략) ⑤ <u>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u>	제66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 ④(현행과 같음) (삭제)
(신설)	제66조의2(집행부에 대한질문) ① <u>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(이하 “시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</u> ② <u>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후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허가 할 수 있다.</u> ③ <u>시정질문을 할 때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보충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.</u> ④ <u>시장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u>